

#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정관

(제정) 2019.10.01. 설립발기인 총회

(개정) 2023.01.20.

(개정) 2023.06.08.

(개정) 2024.01.03.

(개정) 2024.06.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청년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립근거) 재단은 「민법」과 「논산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지산동)에 둔다.

제5조(사업의 종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체험·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운영 및 진흥사업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축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복지·보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5.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포상
6.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7.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년지원을 위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

경, 담보 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장기차입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발생한 수익금
4. 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 <신설 2024.01.03.>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임원(대표이사 제외)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근로자이사 1인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대표이사, 근로자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성과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에 승인후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④ 당연직 이사는 시 청소년업무 국·과장, 정책보좌관이 된다.
- ⑤ 선임직 이사는 지역사회 및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⑥ 근로자이사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⑦ 감사는 당연직 감사 1인과 선임직 회계전문가 1인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감사는 시 감사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 ⑧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④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가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6.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임원의 면직)** 임원이 그 직위나 직무를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직원을 이사장에게 제출하며,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

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회의 개의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이사회회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장 사무국

제29조(사무국) ①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직원의 임용절차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징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 등 요청) ① 재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자에게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민, 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제31조(파트너십) ① 재단은 제1조 목적 및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민, 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과 제5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6조(청산종결의 신고)**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9장 기부금을 통한 사업

제39조(기부금의 사용) 지정기부를 통한 기부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본조신설 2024.01.03.]

제40조(기부금 사용 공개)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4.01.03.]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재단의 설립 당시에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규정 등을 작성 확정할 수 있으며, 직원채용, 예산편성 등 필요한 행정 행위를 시행 한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라 재단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의 세부 규정 제정 이전에는 관계법령 및 논산시 각종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개정 2023.01.20.)**

이 변경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06.08.)**

이 변경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01.03.)**

이 변경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06.27.)**

이 변경정관은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